

제274회 강서구의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9. 1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미래·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년 9월 16일
전문위원 정 우 숙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0 - 84
- 나. 제출자: 박성호 의원 외 8명
- 다. 제출일자: 2020년 9월 3일
- 라. 회부일자: 2020년 9월 9일

2.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을 추진함에 있어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예방접종의 의료기관 위탁을 위한 법적근거 및 세부지침을 명확히 함(안 제9조)
- 나. 임시예방접종의 시행 및 무료접종의 대상을 명시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6조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나. 예산조치: 추경예산 편성

다. 협조부서: 보건행정과

라. 기 타: 입법예고(2020. 9. 4. ~ 9. 8.)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강서구에서 시행하는 임시예방접종의 대상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9조 제2항에서 필수예방접종업무의 의료기관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세부지침을 명시하였으며,
- 제9조의2를 추가하여 무료예방접종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 무료 예방접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와 임시예방접종의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 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강서구보건소에서는 매년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및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 임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음
 - ※ 2019년 임신 예방접종(무료) 대상 및 실적 하단 참조
-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가을철 인플루엔자와 동시 유행의 경우 합병증 발생과 입원자 증가로 의료인, 병상 등 의료자원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가 시급한 실정으로 이를 위해
 -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의 확대
 - 서울시 사업으로 대민접촉의 빈도가 높은 인플루엔자 위험직군1)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임
- 인플루엔자 위험직군에 대한 무료접종 확대를 위해서는 사전에 조례에 명확한 근거를 명시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바,
-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상위법령에 부합되며, 사업의 추진의 근거 마련을 위한 적시성이 요구되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2019년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실적

구 분	국가사업(국비·시비·구비)			구 사업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건강취약계층	SI 대응요원 등
114,928명	43,390명	1,021명	66,670명	3,185명	662명

- 어린이: 생후6개월 ~ 만12세 및 중학교 1학년 (2020년 만18세까지 확대)
- 어르신: 만 65세 이상 (2020년 만62세 이상으로 확대)

1) 의료인력, 대중교통 운전원, 보육시설 종사자, 공동주택 경비인력, 환경미화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산후조리원, 키움센터 종사자 - 서울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추진계획(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1496호, 2020.08.18.)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